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제출년월일 : 1996. 6.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 안 이 유

현행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92.8.17 조례 제2,236호)중 지방재정법 제77조(법률 제4,795호 '94.12.2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14,646호 '95.5.16)의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개정('94.7.4)에 따른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대부료 및 사용료율,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교육장에게 건물 철거 처분권 일부를 위임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제60조 및 제63조의 개정에 따라 "청·소"의 용어를 "관서"로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4항에 중요재산 범위 신설로 제5조 삭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와 범위를 개정 (안 제34조)

○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 (안 제23조)

○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고 지하층의 산출기준을 신설함 (안 제25조 제3호)

○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퍼센트로 명확히 함 (안 제 28호)

○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 노후건물·공작물·무체재산 철거결정과 처분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사항 신설 (안 제4조 제1항)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를 평정가액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개정함 (안 제11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타 시·도 비교표 : 따로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4호·제5호,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다·마목, 제4조제2항, 제1조제1항중 "청·소"를 각각 "관서"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중 "직할사업소를"을 각각 "직속기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및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노후건물,공작물,무체재산 철거결정과 처분(단, 교실은 제외)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중 "목적과 새마을사업에"를 "목적으로"하고, "100분의3"을 "100분의3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100분의15"를 "1천분의50"으로 "100분의5"를 "1천분의8"로 하며, 동조제4항중 "100분의3"을 "100분의6"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및 제3호중 "각 호의"를 각각 "각 목의"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교육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제2항중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사항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청.소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할사업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중 교육청과 제2청.소 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 직속기관을 ....관서.....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2청.소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청 직할사업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4. 제2관서 : .... 직속기관을 .....
5. 청.소의 장 : 제1청소와 제2청.소의 장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생략)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소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교육장과 제2청.소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서.....관서.....관서.....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청.소의 장에게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청.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관서.....관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위임사무)① .....관서.....
1.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당해 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1. ..관서.....관서.....

현 행	개 정 안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가.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가. .....관서..... .....
나. 교육청과 제2청.소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나.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및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노후건물.공작물.무체재산 철거결정과 처분(단, 교실은 제외)
다. 교육청과 제2청.소 소관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 출자	다..... 관서.....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교육청과 제2청.소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마.....관서 ....
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장은 제2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② ....관서..... .... 관서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요재산) ① 교육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채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2.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3. 제1호와 제2호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③ (생 략)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유재산심의회)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①..... ..... 관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 및 처분)①-②(생략)	제11조(관리 및 처분)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1.~ 2.(생략)	1.~ 2.(현행과 같음)
3. 평정가액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3. ..... 1천만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①... .... 목적으로 .... 100분의 3이상.....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당해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 ....1천분의 50 .... 1천분의 8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 100분의 6 .....
1.~ 2.(생략)	1.~ 2.(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생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 각목의 ....
가.~다.(생 략)	가.~다.(현행과 같음)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 각 목의.....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가.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마.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사.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교육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년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영 제84조 및 교육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② .... 사항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

□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소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③~④ 생략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취득·처분결과의 보고범위·서식등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분의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광업·채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① (생략)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4 (생략)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ㅇ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 (건물사용료산출기준)①~② (생략)

③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1층은 부지가액의 2분의 1
2. 2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 1
3. 3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 1
4. 4층이상은 부지가액의 각 5분의 1
5. 지하 1층은 부지가액의 3분의 1
6. 지하 2층은 부지가액의 4분의 1
7. 지하 3층이하는 부지가액의 5분의 1

제36조 (대부)① (생략)

②국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제36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4조 <일시납부의 경우> 을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을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시.도별 공유재산관리조례비교표

기관별 / 내용		대전 개정전	대전 개정후	교육부 조례시안	내무부 조례준칙	대전광역시 조례	타시도별비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비고
공유재산 철거사항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위임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 사용료율		5/100	5/100	10/100	50/1000	50/1000	50/1000	50/1000	5/100	5/100	50/1000	50/1000	50/1000	5/100	50/1000	5/100	
공유재산중 공용.공공용의 목적 사용료율		3/100	3/100 이상	6/100	25/1000	25/1000	25/1000	25/1000	3/100	3/100	25/1000	25/1000	30/1000	2.5/100	25/1000		
경작목적 사용료율	농지소득금액	15/100	50/1000	15/100	50/1000	50/1000		50/1000	50/1000	5/100	50/1000	150/1000	150/1000	15/100	150/1000	15/100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	5/100	8/1000	5/100	8/1000	8/1000		8/1000	8/1000	2/100	8/1000	25/1000	50/1000	2.5/100	25/1000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사용료율		3/100	6/100	6/100	40/1000	40/1000	40/1000	40/1000	4/100	3/100	40/1000	40/1000	60/1000	4/100	40/1000	4/100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		3/100	6/100	6/100	40/1000	40/1000	40/1000	40/1000	4/100	5/100	40/1000	40/1000	60/1000	4/100	40/1000	4/100	

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6年 6月 17日

文 敎 社 會 委 員 會

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1996. 6. 17.
文敎社會委員會

Ⅰ. 審査經過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 6. 5 대전광역시 교육감
2. 회 부 일 자 : 1996년 6월 5일
3. 상 정 일 자 : 제52회 대전광역시 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 6. 17)
   상정, 심사, 의결

Ⅱ. 提案說明要旨 (提案說者 : 管理局長)

1. 提 案 理 由

○ 현행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92. 8. 17 조례 제2,236호)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법률 제4,795호 '94.12.22)및 같은법시행령 제 84조 (대통령령 제 14,646호 '95.5.16)의 개정에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 ('94.7.4)에따른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대부

료 및 사용료율,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 연체료율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교육장에게 건물 철거처분권 일부를 위임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主 要 骨 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제60조 및 제63조의 개정에 따라 "청·소"의 용어를 "관서"로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4항에 중요재산 범위 신설로 제5조 삭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기와 범위를 개정 (안 제23조)

○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 (안 제23조)

○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고 지하층의 산출기준을 신설함 (안 제25조)

○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 15%로 명확히 함. (안 제28조)

○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 노후건물·공작물·무체재산 철거결정과 처분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사항 신설 (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를 평가액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개정함 (안 제11조)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김 진 호)

○ 본개정안은 1991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조례 제217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해오던 기존의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1994년 12월 22일과 1995년 5월 16일 법률제4795호와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각각 개정되고,

국유재산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도 1994년 4월 12일과 1994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14,209호와 재무부령 제1991호로 각각 개정됨에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이들금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15%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의 노후건물, 공작물, 무체재산등의 철거 결정과 처분사항등을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아니하는 공유재산을 평정금액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조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Ⅳ. 討 論 要 旨 : 省 略

Ⅴ.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Ⅵ. 審 査 結 果 : 原案可決

Ⅶ.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